

발행인 : 서울특별시중랑구청
 편집인 : 기획홍보과장
 서울특별시중랑구 봉화산길 179
 번지



전화 : 2094- 0470 ~ 5

제1662호

2010. 8.
2.

공 고

제2010- 531호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제2010- 532호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

인사발령

사회복지직 8급 공무원 복직 6
 기술직 5급(녹지) 공무원 인사교류(전입) 6
 사회복지직 8급 공무원 복직 7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7

※ 전부서 및 의뢰기관에게 알려드립니다.

- ➡ 중랑구보 게재의뢰 및 편집 문의 TEL: 2094- 0474 / FAX: 2094- 0479
- ➡ 중랑구보 발간일은 매주 목요일이며,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 발행
- ➡ 중랑구보 게재접수는 D- 3일 18:00 까지이며 공휴일은 날짜산정에서 제외

D- 3일 접수 →
 D- 2일 편집.교정 →
 D- 1일 편집.교정 →
 D일 발간

- 🔴 구보게재일자가 문서시행일이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 람										
--------	--	--	--	--	--	--	--	--	--	--



공 고

서울특별시중랑구 공고 제2010- 531호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0년 8월 2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서울특별시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조례」가 개정(2009.7.30)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및 도로굴착복구기금운영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고, 심의회 위원에 서울특별시중랑구 의원을 신설하여 기금 운영의 내실화와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나.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함(안 제3조)

나. 심의회 구성(안 제7조)

1) 10명 이내 → 12명 이내로 확대

2) 위원 자격 :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 의원 추가

다. 현행 규칙에서 규정한 심의회 운영 및 수당 등을 조례에 규정
(안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4)

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

3. 의견제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중랑구청장(참조: 도로과장,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길 179, 우편번호 131-701, 전화 :2094-2704, FAX:2094-2689. E-mail: okwjun@j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랑구청 도로과(☎2094-270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 공고 제2010- 532호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0년 8월 2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가. 도로법에 따라 시도상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공사시 감독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시켜 징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가 개정(2010.7.15)됨에 따라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나.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도로굴착으로 인한 공사 시 감독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한 규정 추가(안 제3조제2항)
- 나.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 추가(안 제3조제3항 및 안 별표 3)
- 다. 감독업무비 산출방법 추가(안 별표 1)
- 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중랑구청장(참조: 도로과장,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길 179 우편번호 131-701, 전화: 2094-2704, FAX:2094-2689. E-mail:okwjun@j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랑구청 도로과(☎2094-2704)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발령

사회복지직 8급 공무원 복직

2010. 7. 23.

중랑구청장

연번	성명	발령내용	현직	
			부서	직급
1	노미선	복직을 명함 면목제2동근무를 명함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지방사회복지 서기

기술직 5급(녹지) 공무원 인사교류(전입)

2010. 7. 26.

중랑구청장

연번	성명	발령내용	현직	
			부서	직급
1	강성락	중랑구 전입을 명함 도시환경국 공원녹지과장에 포함	종로구	지방녹지 사무관

사회복지직 8급 공무원 복직

2010. 7. 28.

중랑구청장

연번	성명	발령내용	현직	
			부서	직급
1	김지혜	복직을 명함 면목제2동 근무를 명함	면목제2동	지방사회복지서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2010. 7. 31.

중랑구청장

연번	성명	발령내용	현직	
			부서(직위)	직급
1	박종두	지방시설사무관(지적)에 임함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재정경제국 지적과	지방시설 주사(지적)